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마 리 나 항 만 의 조 성 및 관 리 등 에  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# 1. 의결주문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 개정(법률 제17026호, 2020. 2.18. 공포, 2022. 2.19. 시행)에 따라 신설된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등록기준 및 적용범위를 마련하고, 승계기준을 설정하며, 마리나선박업 보험가입 기준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한편, 마리나선박 정비사 행정처분 기준·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기준 신설(별표 1의2 개정)
  -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위한 인력·시설기준을 마련하고, 등록기준 적용범위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도입취지인 기관고장 저감 및 정비신뢰성 제고를 감안하여 마리나선박 중 모터보트·고무보트 및 요트의 기관(Engine) 계통으로 한정함
- 나. 마리나선박업 변경등록 기준 개정(안 제32조의2 개정)
  -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변경등록 대상을 “선박 수”에서 “선박명세”로 하고, 선박의 계류시설을 변경등록 대상에 포함하며, 정비업 등록

변경사유를 주요 등록사항인 사업장 소재지, 정비항목으로 정함

다. 마리나선박업 보험가입 규정 개정(안 제32조의4 개정)

- 마리나선박업 보험가입 세부기준 적용대상을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 규정함

라. 마리나선박 정비업 승계기준 신설(안 제32조의3 개정)

-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매, 환가 또는 압류재산 매각 등 승계대상 시설·장비를 정비업 등록요건 중 정비시설로 규정함

마. 마리나선박 정비사 행정처분(안 제32조의8, 별표 3 신설)

-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·절차 마련

바. 권한의 위임 및 위탁(안 제35조제1항 개정)

-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과 정비사 자격관리 등 업무의 민원편의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업 등록, 자격증 발급 및 행정처분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함

사. 부칙(안 신설)

-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2년 2월 19일로 하되,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은 시행일로부터 1년, 인력요건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행을 유예함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실시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식별된 신설  
규제(2건)에 대한 규제심사 예정

- 신설규제 :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범위·기준, 마리나선박 정비사 행정처분 기준·절차

##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 일부개정령안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제1항 중 “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보관·계류업”을 “마리나선박 대여업, 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업 및 마리나선박 정비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수”를 “명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사무실의 소재지
- 5. 마리나선박 계류시설(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6. 마리나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종사자
- 7. 마리나선박 정비항목(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

③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업무범위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모터보트, 고무보트 및 요트의 추진기관 계통의 정비로 한다.

제32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마리나선박 정비업: 마리나선박 정비시설

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마리나업 등록을 한 자(이하 “등록사업자”라 한다)”를 “마리나선박 대여업에 등록한 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마리나업”을 “마리나선박 대여업”으로 한다.

제32조의5제4호가목 중 “경우: 등록사업자”를 “경우: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등록을 한 자(이하 “등록사업자”라 한다)”로 한다. 제4장의2에 제3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8(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소 등) ① 법 제28조의12제6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35조제1항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0.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
- 21.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명령

별표 1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3.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등록기준

항 목	등 록 기 준
가. 정비 인력	마리나선박 정비책임자 중 1명 이상은 법 제28조의11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갖출 것

나. 작업장 등	1) 시설을 소유하거나,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
	2) 작업장·공구창고 등을 포함하여 20㎡ 이상의 면적을 갖출 것

별표 1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※ 비 고 : 별표 제1의2 제3호에 따른 등록기준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모터보트, 고무보트 및 요트의 추진기관 계통을 정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2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1의2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별표1의2 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 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

###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소·정지처분 기준(제32조의8 관련)

#### 1. 일반기준

- 가.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처분기준이 다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취소를 하며,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. 이 경우 합산한 자격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나.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- 다. 나.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차수(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 2회 있었던 경우 높은 차수 적용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단,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#### 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	법 제28조의12 제5항제1호	자격 취소		
나. 법 제28조의12제3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 제28조의12 제5항제2호	자격 취소		
다.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	법 제28조의12 제5항제3호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
		자격 정지 1년	자격 정지 2년	자격 취소
라.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정지 기간에 마리나선박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28조의12 제5항제4호	자격 취소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의2(마리나업의 등록)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<u>대여업</u> 및 마리나선박 <u>보관·계류업</u> 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	제32조의2(마리나업의 등록) ① - ----- ---- <u>대여업, 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업 및 마리나선박 정비업</u> -----.
②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마리나선박의 수(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	2. ----- 명세----- 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사무실의 소재지(마리나선박 <u>보관·계류업</u> 의 경우만 해당한다)	4. <u>사무실의 소재지</u>
<신 설>	5. <u>마리나선박 계류시설(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</u>
<신 설>	6. <u>마리나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종사자</u>
<신 설>	7. <u>마리나선박 정비항목(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</u>

제32조의3(주요시설) 법 제2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”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	제32조의3(주요시설)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<u>마리나선박 정비업: 마리나선박 정비시설</u>
제32조의4(보험 가입 등)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<u>마리나업 등록을 한 자(이하 “등록사업자”라 한다)</u> 는 법 제28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	제32조의4(보험 가입 등) ----- ----- <u>마리나선박 대여업에 등록한 자</u> ----- ----- -----.
1. 가입기간: <u>마리나업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</u>	1. ----- <u>마리나선박 대여업</u> ----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32조의5(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) 법 제28조의9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2조의5(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)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급	4. ----- -----

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“입회금”이라 한다)의 반환

가. 회원의 입회기간 중인 경우: 등록사업자와 회원 간 계약서에 따를 것

나. (생략)

5. ~ 7. (생략)

<신설>

제3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19. (생략)

-----  
-----

가. ----- 경우  
우: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등록을 한 자(이하 “등록사업자”라 한다)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32조의8(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소 등) ① 법 제28조의12제6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3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.

1. ~ 19. (현행과 같음)

<신설>

<신설>

20. ~ 24. (생략)

② (생략)

20.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

21.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다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명령

22. ~ 26. (현행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57